

시 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99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교육훈련팀장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함께 만나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2018년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운영계획

2018. 1.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 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회 적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 자 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 거 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 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기 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 책 영 문 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바 른 우 리 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결 재 문 서 공 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8년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운영계획

【서울주택포럼】 도시·건축·주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통해 新주택정책 개발의 비전 및 정책 아이디어 공유
【주택정책특강】 주택·건축 등 업무 관련 전문가 강연을 통해 현장경험 공유, 전문지식 습득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지식 제고

1. 추진근거

- 주택정책과-2925호(17.2.15): 2017년 상반기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운영계획
- 주택정책과-12818호(17.7.14): 2017년 상반기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운영계획
- 인력개발과-460호(18.1.9): 2018년도 “함께서울 학습동아리” 운영 및 평가계획

2. 사업개요

■ 서울주택포럼

○ 운영목적

- 도시, 건축, 주택, 금융,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와 학제적인 특징을 지닌 주택 정책을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을 갖고, 종합적 사고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체계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의 인문적 지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 기본방향

- 주택정책 및 건축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의 후 청중들과 토의

■ 주택정책특강

○ 운영목적

- 주택시장 및 부동산정책, 도시정책, 건축정책 등 주택건축국 각 과별 현안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 초청 강연을 통해 현장경험 공유, 전문지식 습득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지식 제고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시행하여
우리시 주요 정책사업의 활발한 홍보

○ 기본방향

- 주택건축국 각 과별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관계자, 국내·외 최신 경향과 선진 사례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개최
- 주택·부동산, 건축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 및 학습 분위기 조성
- ※주택정책과·주택정책개발센터 「포용적 주거문화 연구회」 동아리 신설 및 활동 활성화

3. 운영계획

개최횟수 및 개최주기 : 총 20회 / 월 2회(첫째, 셋째 주 금요일)

○ 주택정책특강 : 월 1회(매월 첫째 주 금요일, 07:30~09:00)

○ 서울주택포럼 : 월 1회(매월 셋째 주 금요일, 07:30~09:00)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도시계획국의 「도시아카데미」 운영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및 협의

※8월은 여름휴가 시즌으로 휴강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또는 대회의실 등

대 상 자 : 약 70명

○ 주택건축국 간부 및 실무담당자

○ 관련 실국(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개선단 등) 직원

○ SH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 본청 및 자치구 도시·건축·주택 관련부서 직원 등

진행방법 : 전문가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07:30 ~ 08:00(30')	• 간담회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전문가 등
08:00 ~ 08:03(3')	• 강연소개	사 회 주택정책개발센터장
08:03 ~ 08:53(50')	• 강연	강 연 전문가
08:53 ~ 08:58(5')	• 질의응답	사 회 주택정책개발센터장
08:58 ~ 09:00(2')	• 마무리	사 회 주택정책개발센터장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2018년 2월~7월 강연주제(안)

○ 주택정책특강, ● 서울주택포럼

연번	강 연 주 제	일시 및 장소
1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 주택정책 관련 법령 (진미윤 연구위원 / LH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연구실)	'18. 2. 2 (금) 3층 공용회의실
2	주거혁명(박영숙 겸임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18. 2. 23 (금) 3층 공용회의실
3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정헌목 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	'18. 3. 2 (금) 3층 공용회의실
4	골목길 자본론(모종린 교수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18. 3. 16 (금) 3층 공용회의실
5	한국 건축의 정체성(이상헌 교수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18. 4. 6 (금) 3층 공용회의실
6	미래주거문화 대혁명(양철승 대표이사 / (주)부동산가치투자 연구소)	 '18. 4. 20 (금) 3층 공용회의실
7	배려도시(변환희 수석연구원 / LH토지주택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18. 5. 11 (금) 3층 공용회의실
8	가장 도시적인 삶(황두진 건축가 / 황두진건축사사무소)	'18. 5. 25 (금) 3층 공용회의실
9	거주박물관(박철수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18. 6. 1 (금) 3층 공용회의실
10	'18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시장 동향(허윤경 박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8. 6. 15 (금) 3층 공용회의실
11	도시의 승리, 복지국가의 정치학(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 / 하버드대학)	 '18. 7. 10 (화) 3층 대회의실
12	녹색건축 깊이 읽기(박기범 서기관 / 국토교통부)	'18. 7. 20 (금) 3층 공용회의실
13	포용형 사회의 실천(전홍규 교수 /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	 '18. 8. 3 (금) 3층 공용회의실

※ 2월, 7월 10일은 강연자 섭외 완료

※ 강연순서, 주제, 강연자는 국장, 과장, 업무 담당자 등 추후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3,320,000원
- 강사료 및 원고료 : 8,320,000원
 - 강사료 : 20회 × 전문가 1인 × 일반1급기준(230,000원(1시간)+120,000원(초과)) = 7,000,000원
 - 원고료 : 20회 × 전문가 1인 × 11,000원(B5용지 1면 기준) × 6장 = 1,320,000원
- 회의준비 : 5,000,000원
 - 다과 및 음료 : 20회 × 250,000원 = 5,0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 추진계획

- 특강 및 자료 관리
 - 외부전문가들의 발표자료 및 토론자료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2018년도 자료집 발간
- 「포용적 주거문화 연구회」 동아리 신설
- 7월 중 하반기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주제선정
 - 주택건축국 내 “함께서울 학습동아리”와 사전 협의

순번	부서	동아리
1	임대주택과	「무한공급」
2	건축기획과	「창조적인 건축」
3	한옥조성과	「온고지신」

- 붙임 1. 2017년 운영실적 1부.
2.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1부. 끝.

별첨 1

2017년 운영실적

다양한 주제와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시행

○ 강연시행 : 총 8회

○ 참석인원 : 총 568명 (평균 약 70명)

강연자료집 및 CD제작



강연 리스트

구분	일시	주 제	강 연 자
1	2.14(금)	인구경제와 한국미래 - 한일비교	전영수(한양대학교 교수)
2	3.17(금)	최근 뉴욕 건축의 새로운 경향	정현태(미국 리하이대학교 교수)
3	4.13(금)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미래전략과 정책	서용석(카이스트 교수)
4	5.26(금)	새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전망과 과제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5	7.14(금)	2017년 주택시장동향 및 전망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6	8.11(금)	Paris 도시풍경	박선욱(경남대학교 교수)
7	8.25(금)	저성장시대 런던의 도시정책 경험과 교훈	이영아(대구대학교 교수)
8	11.17(금)	2018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 강사로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 별 1 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총수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 별 2 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 반 1 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 반 2 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 반 3 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 조 강 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 어 강 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할 그 사례에만 적용
-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 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인 원	지 급 액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7. 공무원 출강강사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안내

- 월 3회·6시간 제한(기준 초과시 소속기관장 등의 별도 승인 받도록 함) 준수 등

2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